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28호

의 안 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대 상 기 관 고 용 노 동 부,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의결연월일 2015. 11. 23.

주 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1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 지>

희망의 새 시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2015. 1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순서

I . 추진배경	1
II . 제도 현황	2
III. 실태 및 문제점	8
1. 훈련비 부정수급 만연	8
2.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운영 체계 부실	12
3. 직업능력훈련비 지급체계 허술	15
4. 부정수급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18
IV. 개선방안	23
1. 직업능력훈련 운영 체계 관리 강화	23
2. 훈련비 지급 내실화를 위한 기준 등 개선	25
3. 부정수급 제재 처분의 실효성 강화	27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30

I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138번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협업과제(고충처리국) : 사업주 위탁 직업훈련 제도개선(2014년 연계과제)

□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 보장, 고용의 질 향상, 능력중심의 노동시장 정립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

※ 직업능력개발사업 : 국가(고용노동부)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사업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하지만 근로자능력개발에 사용되어야 할 훈련비를 운영체계 미흡, 사후제재 부실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 급증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편취금액 최근 3년간 약 8배 증가

※ 부정수급액 : '12년 8억3천만원 → '13년 24억 4천만원 → '14년 71억 6천만원

○ 훈련과정을 신청만 하면 인정받는 등 심사가 부실하고, 부정수급 훈련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 허술한 사업관리

○ 금전적 제재가 실제 행위자인 위탁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 집중되는 등 부정수급의 실제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장치 미비

□ 이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8월), 실태조사(8~9월), 관계기관 협의(10월)

II

제도 현황

□ 제도 개요 및 법적근거

- (제도 의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 (관련 재원)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연도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액	322,524	330,775	359,555	456,806 (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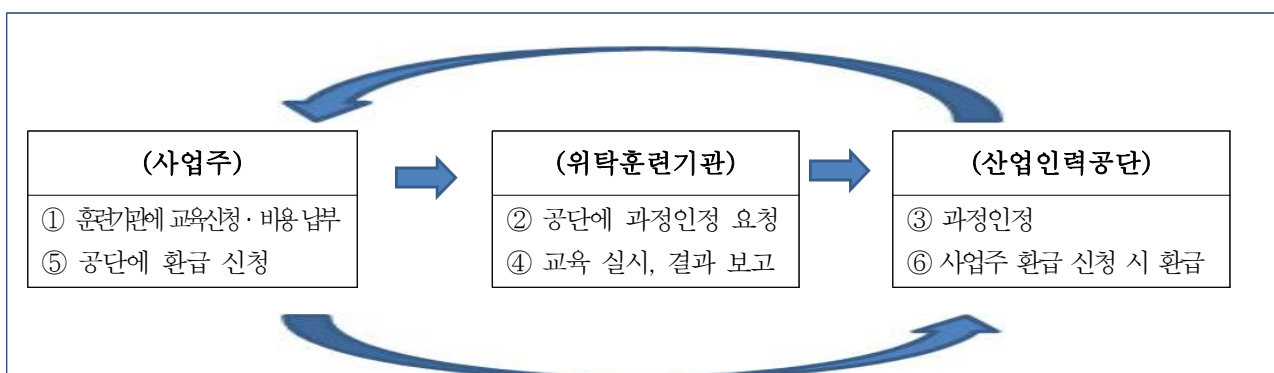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령,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규칙),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에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등)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종류

- (훈련 주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

<위탁훈련 절차>



- (훈련 대상)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과, 재직자 대상의 향상훈련, 전직자 대상의 전직훈련
 - 양성훈련은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① ‘훈련 전 채용약정 + 훈련 후 채용’을 요건으로 훈련비 지급, ② 훈련비 외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 ③ 연간 훈련비 지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향상훈련은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① ‘훈련개시일 기준 재직자 여부’를 요건으로 훈련비 지급, ② 훈련비 외 훈련수당 지급 불가 ③ 연간 훈련비 지원한도 적용
- (훈련 방법) 집체훈련, 현장훈련,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혼합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수행 기관

- (고용노동부) 법령·정책수립, 기금관리, 지도·점검, 행정처분, 징수 등
- (산업인력공단) 훈련과정인정, 수료확정, 비용지원, 훈련과정 모니터링
-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위탁훈련과정인정 심사(‘15년 5월 개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사업주(단체) 등임
- 훈련기관 지정(등록)권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 지정직업훈련시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 업무 수행

※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등록업무 수행

구분		설치근거	예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정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28조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고등교육법 상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 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 내지 제27조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 평생 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 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등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 으로 운영하는 학원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	LG인화원, STX아카데미, 한국 금융연수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관		직능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외 다른 법률	(재)건설기술교육원, 한국발명 진흥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 생산성 본부 등

□ 201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실적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훈련비율은 50.2%, 300인 미만 사업장은 22.6%로 규모가 큰 기업이 사업주훈련에 더욱 적극적

(단위: 명)

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피보험자수	훈련실시인원		피보험자수	훈련실시인원		피보험자수	훈련실시인원	
11,930,602	3,615,999	30.3%	8,603,777	1,945,745	22.6%	3,326,825	1,670,254	50.2%

*이하 사업실적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실시인원 비율(%) : 훈련실시인원/피보험자 * 100

- 훈련 주체에 따른 구분상 위탁훈련 비율이 46.1%로 높고, 훈련 방법 상 집체훈련(62.8%)과 인터넷원격훈련(27.9%)이 대다수를 차지

(단위 : 명)

훈련주체	훈련실시인원	비율	훈련방법	훈련실시인원	비율
계	3,615,999	100.0%	계	3,615,999	100.0%
자 체	1,137,396	31.5%	집체훈련	2,270,391	62.8%
위 탁	1,666,773	46.1%	현장훈련	4,574	0.1%
자체+위탁	811,830	22.4%	우편원격훈련	264,832	7.3%
			인터넷원격훈련	1,007,987	27.9%
			외국인취업교육	40,076	1.1%
			혼합훈련	28,139	0.8%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훈련이 훈련인원의 대다수인 96.2%, 훈련 지원금의 72.0%를 차지

- 채용예정자 대상 양성훈련의 경우 훈련인원은 3.4%에 불과하나, 훈련지원금 비율은 25.4%로 인원대비 금액비율이 높은 편

(단위 : 명, 백만원)

지급대상		비용수혜인원		지원금실적	
양성훈련	소계	107,441	3.4%	90,996	25.4%
	자체	65,910	2.1%	38,303	10.7%
	위탁	41,831	1.3%	52,693	14.7%
향상훈련	소계	2,994,231	96.2%	258,791	72.0%
	자체	942,668	30.3%	98,438	27.4%
	위탁	2,051,563	65.9%	160,353	44.6%
기 타		10,340	0.3%	9,769	2.7%
계		3,112,312	100.0%	359,555	100.0%

-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업주직업능력훈련을 가장 많이 실시(39.0%),
훈련시간은 40시간 미만이 대다수(90.0%)

(단위 : 명)

훈련시간	훈련실시인원		훈련기관구분	훈련실시인원	
계	3,615,999	100.0%	계	3,615,999	100.0%
16시간 미만	823,291	2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55,281	20.9%
16~20시간 미만	1,340,337	34.3%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2,104	0.3%
20~40시간 미만	1,258,719	32.9%	직업능력개발단체	1,052	0.0%
40~60시간 미만	196,125	4.7%	고등교육법 상 학교	51,258	1.4%
60~120시간 미만	113,858	3.2%	평생교육시설	1,410,667	39.0%
120~350시간 미만	59,046	1.8%	학원	47,682	1.3%
350시간 이상	13,933	0.5%	사업주단체	882,895	24.4%
			기타	455,060	12.6%

- 기업규모별 지원금 현황을 보면,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지원된 훈련비가 1,400억으로, 전체 지원금 대비 39.0%로 가장 많음

(단위 : 명, 백만원)

기업규모	비용수혜인원		지원금실적	
계	3,112,312	100.0%	359,555	100.0%
5인 미만	403,268	13.0%	80,262	22.3%
5~9인	183,259	5.9%	17,232	4.8%
10~29인	222,800	7.2%	22,017	6.1%
30~49인	113,278	3.6%	10,609	3.0%
50~69인	80,887	2.6%	7,118	2.0%
70~99인	101,701	3.3%	8,918	2.5%
100~149인	121,775	3.9%	10,627	3.0%
150~299인	295,683	9.5%	25,926	7.2%
300~499인	166,026	5.3%	15,442	4.3%
500~999인	263,044	8.5%	21,103	5.9%
1000인 이상	1,160,560	37.3%	140,297	39.0%
분류불능	31	0.0%	4	0.0%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시 제재 처분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부정수급 발생 시 행정상 제재와 금전적 제재 가능
- 행정상 제재처분은 부정행위의 유형·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별

◆ **시정명령** : 위반 내용이 단순·경미한 경우 시정을 명하는 처분

◆ **인정(위탁) 취소**

- ① 인정(위탁)받은 사업주직업능력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위탁)의 효력 상실 처분
- ② 전과정 인정(위탁) 취소와 해당과정 인정(위탁)취소로 구분

◆ **인정(위탁) 제한**

- ①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인정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도 인정(위탁)을 불가하게 하는 처분
- ② 전과정 인정(위탁) 제한과 해당과정 인정(위탁)제한으로 구분
- ③ 부정행위 유형·정도에 따라 제한 기간 차등 적용
 - 가. 인정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 : 1년 전과정 인정제한
 - 나. 거짓으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에서 2년간 전과정 인정제한
 - 다. 거짓으로 비용 지원을 받게 한 경우 : 3개월에서 2년간 전과정 인정제한
 - 라. 인정받은 내용 위반하여 훈련 실시 : 6개월에서 1년간 해당과정 인정제한
 - 마.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자료제출 불응 등 : 3개월 해당과정 인정제한

- 금전적 제재처분은 지원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로 구분

◆ **지원제한** :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비용지원이 되지 않은 경우, 비용지원 제한

◆ **반환명령**

- ①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액에 대한 보전적 환수 처분
- ② 반환명령 대상이 되는 금액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금액

◆ **추가징수**

- 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는 별도로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부가금
- ② 위탁훈련기관 부정수급 추가징수
 - 가. 100만원 미만 : 위반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5배 추가 징수
 - 나. 100만원 이상 : 부정수급액만큼 추가징수
- ③ 사업주 부정수급의 추가징수 : 금액과 관계없이 부정수급액만큼 추가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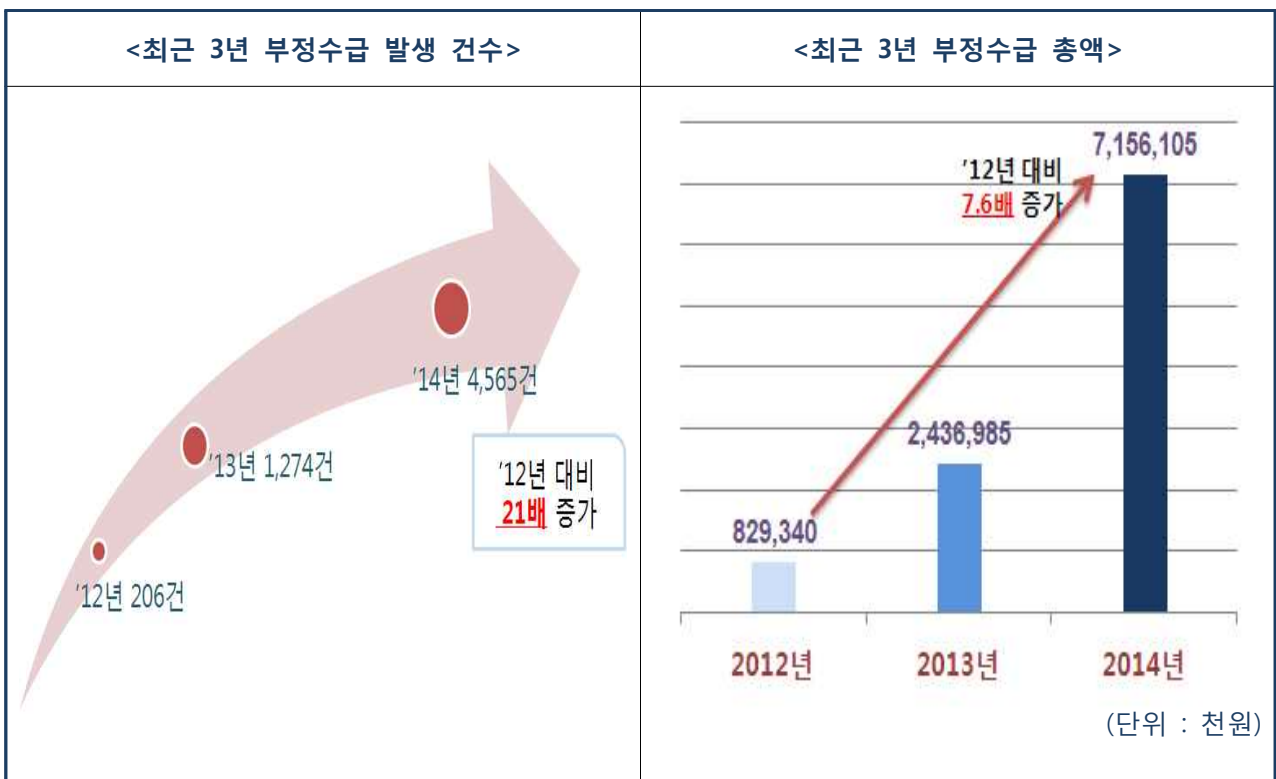
Ⅲ 실태 및 문제점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만연

가. 보조금 편취사례 폭증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6,045건, 부정수급액은 약 104억원에 달해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
- '12년 대비 '14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1배('12년 206건→ '14년 4,565건, 4339건 증가), 부정수급액은 7.6배 늘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연도별 부정수급 발생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 관련법상 의무적 고발대상인 1,000만원 이상 고액의 부정수급 건수도 '14년 72건, 부정수급액 약 23억으로 '12년 대비 4배 증가

<부정수금액 대비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1억 이상
계	6,045	3,931	2,002	91	15	6
2012년	206	176	12	12	5	1
2013년	1,274	718	534	18	3	1
2014년	4,565	3,037	1,456	61	7	4

*자료 : 고용노동부

- 100만원 미만이 3,931건(65.0%)으로 부정수급 다수가 소액인 듯 보이나, 수십~수백건이 하나의 위탁훈련기관에서 비롯되는 특징
- 실례로 전남·광주 소재 실질 대표가 1인인 3개 원격훈련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가 1,437건, 부정수금액이 30억4천만원에 달함

훈련기관명	대표자	업장소재지	관련부정수급건수 (=관련사업주수)	부정수금액	비 고
○○러닝코리아	정□화	광주광역시	774건	16억9천2백	명의상대표
◇◇◇러닝	이◆용	광주광역시	340건	5억6천1백	명의상대표
▲▲교육원	이○우	전남순천시	323건	7억8천2백	실질적대표

*자료 : 고용노동부

나. 부정수급 양태의 다양화 · 전문화

- 편취 유형이 단순 훈련 수강(수료) 허위 조작 등의 방법에서 최근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조작 등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음

<연도별 부정수급 유형>

(단위 : 건)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045(100%)	206	1,274	4,565
수료자 허위조작	3,234(53.5%)	50	414	2,770
증빙서류 조작	1,079(17.8%)	-	721	358
훈련수강 허위조작	588(9.7%)	46	98	444
출결조작	101(1.7%)	-	-	101
위조 프로그램 사용 전산 조작	86(1.4%)	-	-	86
부적격자 훈련 수강	31(0.5%)	1	6	24
직능시설 표준훈련비 적용	2(0.03%)	-	-	2
기타	924(15.3%)	109	35	780

*자료 : 고용노동부

▶ **(자동학습진도프로그램 이용)** 전북 소재 교육대행업체 A에듀, B교육원 등은 전국 674개 사업장 근로자 약 2만명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대리시험 프로그램, 자동 학습진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허위수료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13억을 부정수급('13년 5월, 전북경찰청)

▶ **(장부.서류조작)** 서울 강남 소재 C개발원은 강사료를 실제 7만원 지급함에도 **포토샵 작업 등을 통해 13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수강생을 늘리기 위해 **허위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억 이상의 환급금 편취('15년 6월, 서울강남고용센터)

▶ **(허위 세금계산서, 전산시스템 조작)** 수원 소재 D평생교육원은 관내 133개 사업주와 결탁하여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선부담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된 환급금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7천만원의 환급금 ('15년 6월, 수원 중부경찰서)

- 위탁훈련기관 설립·운영·편취수법 등을 전수하는 대가로 컨설팅비를 받는 전문브로커가 활동하는 등 조직적, 전문적 범죄화되는 경향

▶ **(지원금 편취 전문브로커)** 광주 소재 F양성개발원 대표 곽모씨는 허위 수료자 조작 등을 통해 1억 여원의 지원금을 편취,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자, 주변 지인 8명에게 익산, 전주, 정읍, 김제 등에 유사한 사업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수법 등을 컨설팅 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챙김('15년 4월, 익산 경찰서)

▶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원의 조직적 부정수급 행위)** 연간 10건 내외의 기사를 게시하는 등 유명무실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과대광고, 리베이트 등의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전문적으로 편취하는 업체 급증 ('14년 권익위 부패 신고사건, 고용노동부 △△지청 부정수급 담당조사관 인터뷰)

다. 부정수급 대다수가 위탁훈련기관 주도로 발생

- 불법행위 대다수가 위탁훈련기관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국적으로 편취된 불법이익이 위탁훈련기관에 귀속
- 표본조사¹⁾에 의하면 부정수급 전체 대비 **99.3%**(훈련기관 부정 1,192건/ 전체 부정수급 1,201건)가 위탁과정, 훈련기관의 주도로 나타남

<훈련유형별(자체/위탁) 부정수급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고용센터			▷▷고용센터		
	계	훈련기관 주도	사업주 주도	소계	훈련기관 주도	사업주 주도	소계	훈련기관 주도	사업주 주도
계	1,201	1,192	9	321	319	2	880	873	7
2012년	32	31	1	27	27	0	5	4	1
2013년	369	368	1	113	113	0	256	255	1
2014년	800	793	7	181	179	2	619	614	5

*자료 : 고용노동부

1) 2012년~2014년 대전고용센터 관내 부정수급 건수 321건, 광주고용센터 관내 부정수급 건수 880 건 분석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체계 부실

가. 훈련기관 설립이 용이한 것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창구로 활용

- 사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평생교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39%), 부정수급도 평생교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
- 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상 형식 요건을 갖추어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훈련기관 설립이 가능

<'14년도 훈련기관별 훈련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상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학원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기 타
훈련인원 (비율)	3,615,999 (100%)	755,281 (20.9%)	51,258 (1.4%)	1,410,667 (39.0%)	47,682 (1.3%)	882,895 (24.4%)	468,216 (12.9%)

- 특히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원은 등록 용이, 개인이 운영 가능한 유일한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평생교육원 설립 수단으로 악용
 - ※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은 취재·편집 인력 3명 명의만 제출하면 가능
- 또한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컨설팅 업체 난립, 기사를 자동 업데이트 해주는 프로그램이 공공연히 판매되는 등 부작용 발생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컨설팅 업체 홈페이지

뉴스사이트 구축 & 기사자동등록시스템 판매

나. 형식적인 훈련과정 심사로 신청만하면 대부분 훈련과정으로 인정

- 훈련과정신청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정 인정 등 형식적 심사로 부실 훈련 차단, 부정수급 징후 포착 등 불가
 - 훈련과정 인정은 훈련과 직무와의 관련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의 충실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과정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정 인정] 경기 수원 소재 ▲▲학원의 22억6천만원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① 복지단체와 병원간호사들에게 ‘**무역 실무업무 배우기**’와 ‘**도시 건축 재개발 배우기**’, ② 청소용역근로자들에게 ‘**마케팅 프로가 되자**’, ③ 식품회사 직원들에게 ‘**공인중개사 실무능력 높이기**’, ④ 버스회사 기사들에게 ‘**물류합리화로 성공한 자재관리 배우기**’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모두 인정(‘13년 6월, 경기도지방경찰청)

- 최근 3년간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과정신청은 228,107건, 과정인정은 224,672건으로 과정 인정비율은 98.5%에 달함
 - 부정수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할 때에, 과정 심사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

<연도별(‘12년~‘14년) 훈련과정 심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과정신청	인정 (인정비율)	반려	불인정	인정취소	미실시
계	228,107	224,672 (98.5%)	1,181	1,201	995	58
2012년	65,092	64,349 (98.9%)	170	296	242	35
2013년	80,482	79,610 (98.9%)	188	392	279	13
2014년	82,533	80,713 (97.8%)	823	513	474	10

*자료 : 고용노동부

- 또한 산업인력공단의 성과지표가 전년 대비 훈련 지원금 증가율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형식적 심사 소지
 - 공단 각 지사담당자는 부실훈련이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과정이 발견되더라도 지원금 집행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서 소극적으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다.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통보절차 부재로 부실훈련기관 난립

- 평생교육시설 등록권자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인가 또는 등록취소 가능(평생교육법 제42조)
 - 또한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평생교육법 제28조)
 - 평생교육시설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가·등록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어야 함

◆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3. 4. 생략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4. 5. 생략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현행 직능법 등 관련 규정에는 부정수급 훈련기관의 인가·등록 취소 권자에게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부재
 - 이로 인해 시설 인가·등록취소권자는 직업능력훈련기관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 수가 없으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로서의 결격유무 확인이 불가하여 부실훈련기관 난립, 저품질 훈련 양산

3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 체계 허술

가. 실제 채용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훈련비 지원 (양성훈련)

- 양성훈련은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 훈련비 지급 시 실제 채용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훈련생을 본인 몰래 채용예정자로 허위 등록하여 훈련비 부정 수급
- 이는 현 직업능력훈련 지원 체계상 고용보험 일시 가입(단기 고용 유지) 만으로도 훈련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 집행 시점에 고용보험 취득 사실만 확인되면 훈련비, 훈련수당 등 환급절차 진행
- 전북·광주 소재 6개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제도상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 적발 ('14년~'15년 고용부 익산지청, 광주지청)

<양성훈련 관련 부정수급 흐름도>



- 과장·허위광고를 통해 무료국비훈련생을 모집하여 실제 채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훈련생을 훈련생 몰래 채용예정자로 등록, 신입사원양성과정(채용예정자 과정)으로 훈련신청 후 과정 인정
 - 지원금 집행 시점에 1회 고용보험료 납부로 고용보험 취득하고, 훈련비가 환급되면 고용보험 상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
- ※ 위 6개 사업장은 전문브로커가 훈련기관 설립, 등록 대행 등을 빌미로 컨설팅비 (300~1,000만원), 훈련 관리비(과정별 150만원) 등을 받고 편취 수법 공유
- 훈련비 지급 시 실제 채용여부 확인, 고용보험 상실·정정 신고 시 훈련비 환급 내역 등 부정수급 징후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여 유사사례 재발 우려

나. 지원금 최소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향상훈련]

- 향상훈련은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사업장별 최소 500만원까지 지원(직능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12년~'14년 향상훈련 지원금 최소한도인 500만원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513개 사업장, 지원총액은 약 25억6천만원

<연도별 향상훈련 최소한도 지원 사업장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500만원 지원 사업장 수	513	56	319	138
고용보험료 (사업장별평균보험료)	65,868 (128)	10,763 (192)	26,623 (84)	28,482 (206)
지원액	2,565,000	280,000	1,595,000	690,000

*자료 : 고용노동부

- 사업장별 평균 12.8만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500만원을 지원받아 납부 고용보험료 대비 약 40배 수령
- 직업능력향상을 도모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지원금 최소한도가 과도하게 높아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지원금 최소한도 기준을 악용하여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공모한 부정수급 사례 발생
- 실제 '13년~'14년 어린이집 부정수급의 경우, 전국 영업망을 가진 훈련기관이 500만원 최소한도 기준 등을 악용, 전문모집책을 통해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영업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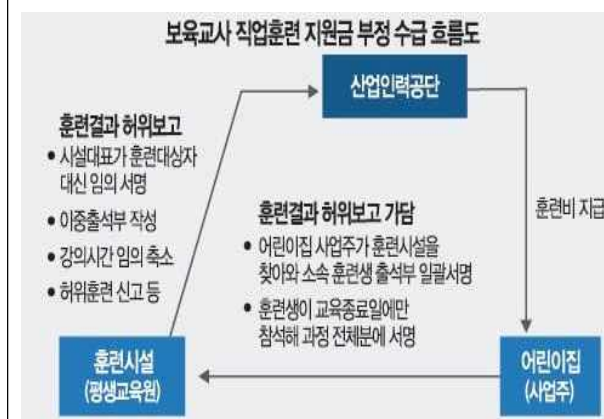
<향상훈련 최소한도 지원 사업장 중 어린이집 비중>

(단위 : 개, 천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500만원 지원 사업장 수	513	56	319	138
500만원 지원 어린이집 수 (전체 중 어린이집 비율)	369 (71.9%)	27 (48.2%)	275 (86.2%)	67 (48.5%)

*자료 : 고용노동부

▶ [어린이집과 훈련기관이 공모하여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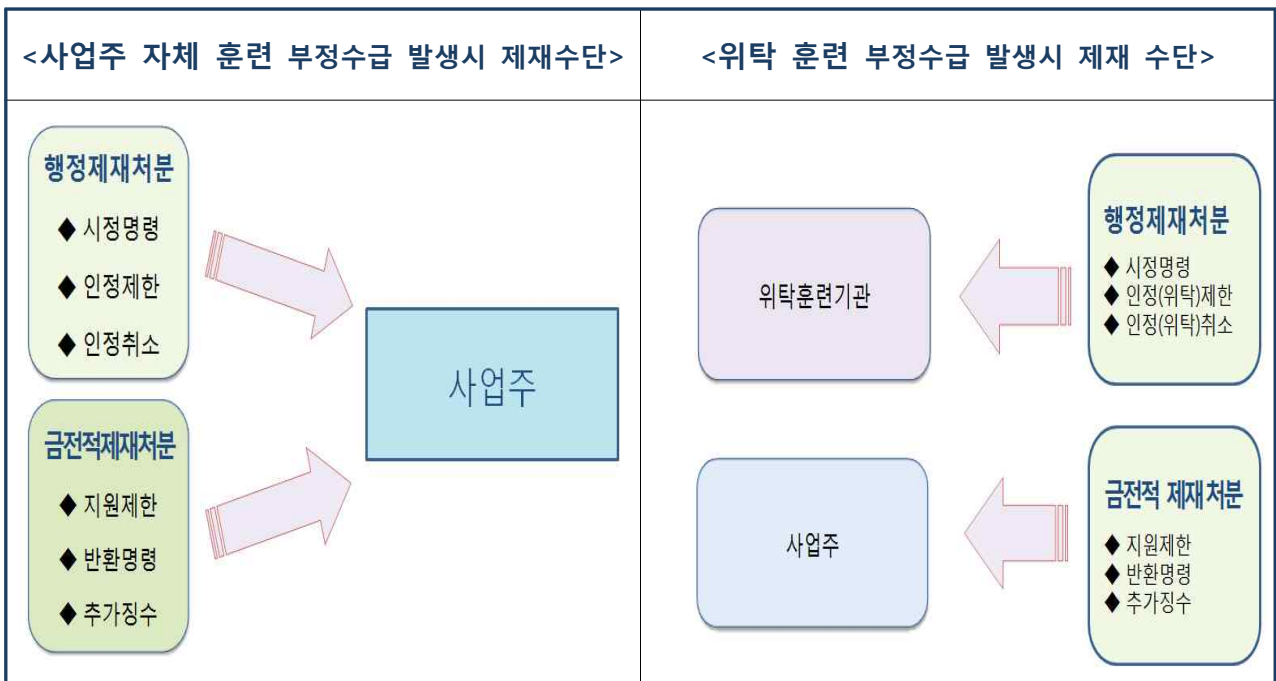
서울 소재 D직업훈련시설은 어린이집 원장과 짜고 허위로 출석부를 만들어 교육없이 교육비를 챙기고, 어린이집은 훈련시설이 꾸며준 허위서류로 정부환급금 부당수령 ('14년 11월, 부패척결추진단)

4 부정수급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가. 부정수급을 주도한 훈련기관은 금전적 제재 불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행정상 처분과 금전적 처분으로 대별
 - 사업주 자체 훈련은 모든 제재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반면, 위탁 훈련인 경우 행정상 제재는 위탁훈련기관에 금전적 제재는 사업주에게 처분

<훈련유형별(자체/위탁) 부정수급 발생 시 제재 수단>



- 불법행위 대다수가 위탁훈련기관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국적으로 편취된 불법이익이 위탁훈련기관에 귀속함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한계
 - 직능법 상 지원 대상이 사업주라는 이유로 부정수급을 주도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훈련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전무
 -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6,045건 중 추가징수 처분건수는 5,991건, 그 중 훈련기관에 부과된 건수는 79건, 1.3%에 불과

- 추가징수 처분건수 중 3~5배 가중 징수한 경우는 24건, 0.4%

<추가징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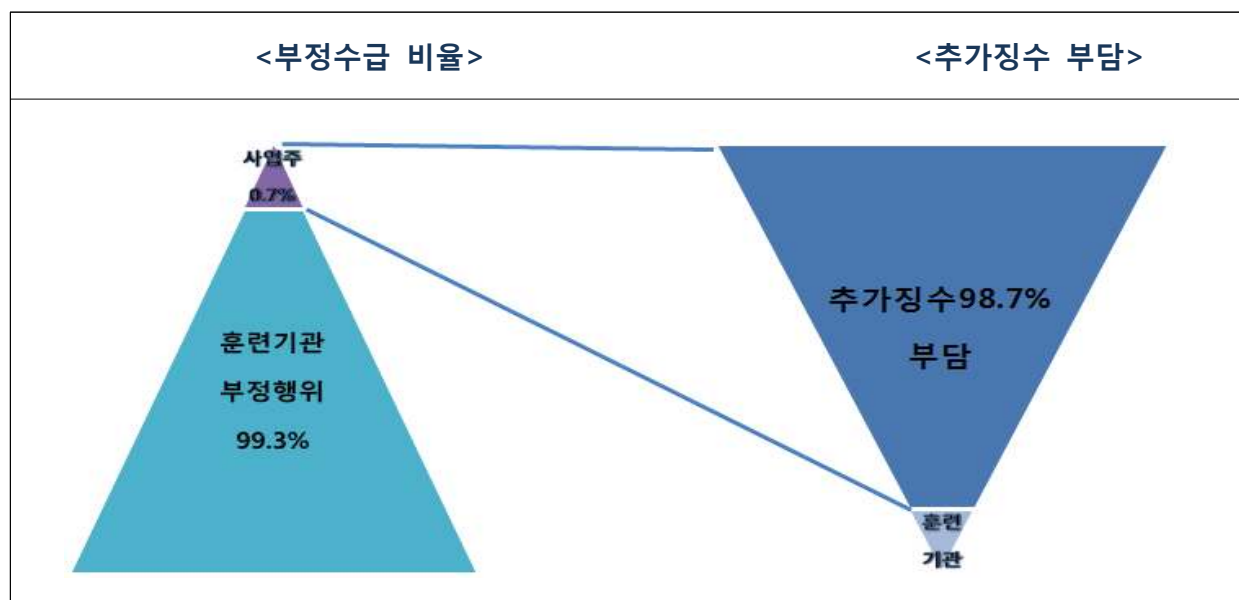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계		5,991(100%)	166(100%)	1,271(100%)	4,554(100%)
사업주	부정액	5,911(98.7%)	133(80.1%)	1,252(98.5%)	4,526(99.4%)
	3배~5배	1(0.02%)	0	1(0.08%)	0(%)
훈련기관	부정액	56(0.9%)	19(11.4%)	14(1.1%)	23(0.5%)
	3배~5배	23(0.3%)	14(8.4%)	4(0.3%)	5(0.1%)

*자료 : 고용노동부

- 부당이익의 보전적 환수인 반환명령과 달리, 추가징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환수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는 처벌의 효과성·형평성 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부정수급 비율 대비 추가징수 부담>



- 이에 관련 행정쟁송 다수 제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불신감 팽배,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

<사업주 직업훈련 추가징수 처분 관련 행정쟁송 제기 현황 (대전, 광주)>

(단위 : 건)

구 분	총계			대전고용센터			광주고용센터		
	계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계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계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	222	177	45	79	69	10	143	108	35
2012년	18	2	16	6	2	4	12	0	12
2013년	123	117	6	46	46	0	77	71	6
2014년	81	58	23	27	21	6	54	37	17

*자료 : 고용노동부

- 이는 반환·추가징수 등 관련 규정은 있으나 부정행위의 실질적 행위자인 **훈련기관에 대한 반환·추가징수** 등은 현행 규정 해석상 불가함에 기인
 - 추가징수를 위해서는 직능법 상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나, 지원체계 상 훈련기관은 “지원받은 금액”이 없어 반환명령, 추가징수 불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6조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자
 -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금액의 5배 이하 금액
 -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나. 소액 부정수급은 엄격, 고액 부정수급은 관대한 불합리한 징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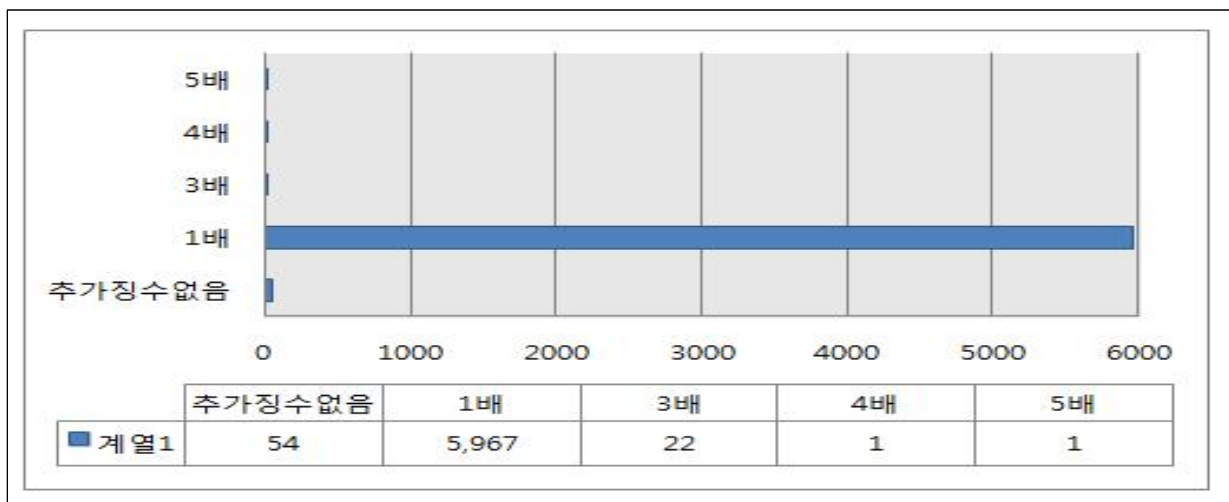
- 현 직능법은 부정수급에 대한 3~5배의 추가징수 제도를 도입·운영
 - 하지만 추가징수를 훈련기관이 100만원 미만의 부정수급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부정 횟수에 따라 3배~5배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제한

<부정수급 추가징수 금액기준 및 추가징수액>

구 분	금액 기준		추가징수액	비 고
훈련기관	100만원 미만	➡➡➡➡➡	3배~5배	● 5년간 부정신청 없는 경우 : 3배 ● 5년간 부정신청 1회 : 4배 ● 5년간 부정신청 2회 이상 : 5배
	100만원 이상	➡➡➡➡➡	부정수급액	부정횟수 관련 비례징수 규정 없음
사업주	없음	➡➡➡➡➡	부정수급액	

- 이로 인해 추가징수 5,991건 중 3~5배 비례징수 건수는 24건, 0.4%에 불과한 수준

<부정수급 추가징수 현황>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 금액이 고액일수록, 위법행위가 반복될수록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일반적

<개별법률 상 제재부가금 관련 규정>

- | |
|---|
| ① 산업기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5배 이하/무/부정수급액 ²⁾
②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법 : 5배 이하/무/위반횟수 |
|---|

- 반면 직능법상 추가징수는 이외는 반대로 소액인 경우에만 3~5배 비례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에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

다. 책임승계 규정 부재로 부정수급 차단 미비

- 행정처분(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에 대한 승계 규정이 없어 훈련기관이 대표자 변경,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을 제재처분 회피 목적으로 악용
 - 또한 부정수급 행위가 직능법 상 지정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 전에 폐원을 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분 효력의 승계 규정 필요
- ※ [부정수급 내사 중인 훈련기관의 처분 회피목적 명의 변경] 부정수급 내사 중인 A교육원의 경우 처분 전에 수사기관,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을 악용하여 상호명, 대표자 변경을 통해 처분 회피 시도 ('14년 권익위 부패신고 사건)
- ※ [동일한 물적·인적 자원을 가지고 바지사장을 내세운 편취 행위] 광주 소재 C교육원 대표 이△△은 원격인터넷훈련기관 I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영업망·LMS시스템 등이 동일한 업체 J, K를 추가로 설립,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금 약 30억원을 편취('13년 2월 광주고용센터)

2) 제재부가금(추가징수금)의 범위/ 소액인 경우 가중 징수 규정 유무/ 추가징수 비례 가중 기준

1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운영 체계 관리 강화

가. 훈련기관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통보

- 평생교육시설을 부정수급 창구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기관의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통보
- (대상행위) 직능법 제24조 의무적 “인정 취소” 사유인 경우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①과정 인정 ② 지원비 수령 ③ 사업주로부터 비용 수령, ④ 사업주의 지원비 수령을 사주
- (통보기관) 훈련기관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권자
 -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육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관 “각 개별법 상 권한자”
- (통보내용) 훈련기관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부정행위 내용, 제재처분

<참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

나. 훈련 과정인정 심사 내실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요건>

① 훈련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관에서 ②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정으로서 ③ 훈련종류별 인정요건을 갖추고 ④ 훈련강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르치는 훈련이어야 함

○ (실체적 요건 심사 강화) 「업종별 직무관련성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과정인정 심사 담당자의 재량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종별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직무관련성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 후 의결로 결정

○ (형식상 요건 확인) 유관기관에 과정등록 확인, 선별적 현장 심사 실시

-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에서 사업주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된 과정인지 여부 확인
- 훈련 장소, 시설, 강사 등 형식상 요건에 대한 선별적 현장 심사를 통해 부실한 훈련신청에 대한 사전 검증

※ 신설 훈련과정, 훈련실시계획서(HRD신청내용) 상 내용 부실 신청, 부정수급 이력 업체의 과정 신청 등

○ (성과지표 수정) 정량적 사업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지양

- 산업인력관리공단 성과지표 중 “사업주훈련 참여 확대율” 또는 “사업주 훈련비 지원금액 달성율” 의 비중 또는 가중치 하향 조정

※ 사업주훈련참여확대율=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대비 수혜근로자 수 증가율

※ 사업주훈련비지원금액달성율= 전년도 훈련비 지급총액 대비 당해 지급총액비율

- 부정수급 업체 모니터링 실적 등 성과에 반영

2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 내실화를 위한 기준 등 개선

가. 훈련비 지급 시 실제 고용 여부 등 확인 (양성훈련)

- (고용기간 확인)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일 경우, 훈련비 지급 신청 시 일정기간 이상의 급여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현행 제출서류	개선안
① 훈련비 계산서 등 비용증빙서류 ② 수료자명단	① 훈련비 계산서 등 비용증빙서류 ② 수료자명단 ③ 급여지급대장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 (고용보험 정정·상실의 진위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또는 상실 신고시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여부 등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					
※취득일, 상실일, 상실사유, 취득 및 상실 취소, 이직확인서 내용 정정 시 사용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담당자명 (직책)		직통 전화번호	FAX번호		
정정 사항	정정사항	☐ 취득취소 ☐ 취득일 ☐ 기타()			
	정정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연번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특기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훈련비 수급 유무 기재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별도로 각 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정신고를 합니다.					
첨부서류 :					
20					
신고인(대표자)					
(성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나. 비용지원 한도의 최소금액 조정 (향상훈련)

- 업종, 근로형태, 훈련수요, 부정수급 발생정도 등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매년 고시하는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직종별 기준단가 조정·고시 절차 참조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개정

현 행	개선안(예시)
제16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융자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 240%로 한다.	제16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제17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비용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달리 정할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 35조에 따라 지원·융자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 240%로 한다.

3 부정수급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

가. 실질적 불법행위자인 훈련기관에 대한 징벌적 환수

- 직능법 제56조를 개정하여 훈련기관에 대한 추가징수 근거 마련

☞ 반환명령은 사업주에게, 추가징수는 부정행위를 주도한 위탁훈련기관에 처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나. 불법행위 정도에 비례한 제재기준 마련

- 소액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 합리화

-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병과하되, 추가징수 감경 기준 마련

<참 고> 제재부가금(추가징수) 감경 기준 입법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1>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 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액/고의·중과실/반복적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정수급액 비례) 일정금액*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른 비례적 추가 징수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상 의무적 고발·수사의뢰 기준금액 1,000만원 등

<참 고> 금액 비례에 따른 제재부가금 입법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의3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 (고의·중과실 가중) 부정수급 행위에 있어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추가징수금 가중 처분

<참 고> 제재부가금 (추가징수) 가중 기준 입법례

중소기업촉진법시행령 <별표1>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정수급 반복횟수에 따라 차등 징수

<참 고> 부정수급 반복횟수에 따른 차등징수 입법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 (추가징수 미납시 가산)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징수 미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마련

<참 고> 추가징수 미납 가산금 입법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 부정수급자 제재처분 책임승계 규정 마련

- (영업양도·법인합병) 부정수급에 다른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합병을 할 경우, 영업양수자 또는 합병 법인에 환수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명문화
- (폐 업) 폐업 시에도 일정기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직업 능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책임 승계

<참 고> 부당이익 환수 처분에 대한 책임 승계 규정 명문화 입법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참고> 폐업 / 폐원시 책임 승계 규정 명문화 입법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

□ 권고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법령

○ 법 령 : 고용보험법(령·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규칙)

○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고시

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직업능력훈련 운영체계관리 강화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통보 (고용노동부) ☐ 훈련 과정인정 심사 내실화(산업인력공단) ○ '업종별 직무관련성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실체적 요건 심사 강화 ○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등 성과지표 수정	'16.12월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지급 내실화를 위한 기준 등 개선	☐ 훈련비 지급 시 실제 고용 여부 등 확인(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 비용지원 한도의 최소금액 조정(고용노동부)	'16.12월
부정수급행위 제재 처분 실효성 제고	☐ 실질적 불법행위자인 훈련기관에 대한 징벌적 환수 (고용노동부) ☐ 불법행위 정도에 비례한 제재기준 마련(고용노동부) ○ 소액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 합리화 ○ 고액/고의·중과실/반복적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정수급 제재 처분 책임승계 규정 신설(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최초 개정시까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5.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인정

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용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용자받았거나 지원·용자받으려고 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용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이미 지원 또는 용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

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용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용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용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 승급,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나.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 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및 교사·강사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이하 이 조에서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50조(추가징수 기준 금액) 법 제56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2.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 교류활동, 취미·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3.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

공단"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의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1.12.30.>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1.3.1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1)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2) 위탁 및 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19조·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 및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이하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 4)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 5)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6)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7)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8)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조문	처 분 내 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항제1호	· 인정제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2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3)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3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4)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4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5)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가)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라)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5호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 시정명령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6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
7)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7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징수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56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②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지원금 등 반환·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를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1.>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를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성훈련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2.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3.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 제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부터 3년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6.30.>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제107조(소멸시효) ①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2., 2010.12.31., 2012.1.13., 2012.10.29.>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라.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제1항제5호나목에 한정한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

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양성훈련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2.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3.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 제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부터 3년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9.15., 2013.12.24., 2014.12.31.>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2012.10.29.>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 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용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과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훈련 대상자·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게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